

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[허가() · 재심사()] 신청서

재산등록 의무자	성명	소속		
	직위(직급 등)	전화번호(휴대폰)		

본인과의 관계	성명	고지거부 사유	서명 또는 인	최종허가일

본인의 직계존속·직계비속 중 위와 같은 사유로 고지거부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2조제4항 및 「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」 제30조에 따라 고지거부[허가() · 재심사()]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재산등록의무자

(서명 또는 인)

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귀중

첨부서류	소득금액 증명서, 재직증명서,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증빙자료
------	--

유의사항
1. 고지거부가 허가된 자가 계속하여 고지거부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,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재산변동신고기간에 고지거부 허가에 대한 재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2. 신청서에는 고지거부 대상자인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서명 또는 인이 있어야 합니다.
※ 최종허가일은 재심사신청일 때에만 기재하십시오.